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25
------	------

2019.12.17.
기획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 제10차 기획경제위원회(2019.12.17.)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1. 제안이유

- 공립대학으로서의 경쟁력 제고, 대내외 협상력 강화 및 대학혁신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서울시립대학교에 부총장제를 도입하고, 총장 직속기구로 미래혁신원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립대에 부총장제를 도입함(안 제3조의4)

- (1)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을 각각 1명씩 둠.
- (2)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함.
- (3) 부총장의 임명방법, 직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나. 서울시립대에 총장직속의 미래혁신원을 설립함(안 제7조의2)

다. 부총장 직위 신설에 따라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하도록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함(안 부칙 제2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시립대”)의 조직을 개편하여 2명의 부총장을 두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총장 직속으로 미래 혁신원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 부총장제 도입(안 제3조의4 신설)

- 안 제3조의4는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시립대에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을 각각 신설하며, 부총장의 임기, 총장의 궐위 또는 부재시의 직무대행 순서를 규정하고, 부총장의 임명방법과 직무 등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학부총장 : 교무, 입학, 학생, 연구, 전산 등 교육관련 분야▶ 대외협력부총장 : 국제교류, 산학협력, 국화·시의화·언론 등의 대외업무와 발전기금 분야 |
|---|

- 시립대 총장은 대학을 대표해 교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립대에는 1999년까지는 총장을 보좌하는 부총장 제도를 운영했으나, IMF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 조정으로 폐지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지난 20년간 대학 기구와 구성원이 크게 확대되었고, 4차 산업 혁명시대 대비 핵심전략 추진, 대학내 이해관계 조정과 중재, 대학혁신 지원사업의 추진동력 확보 등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총장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음.

〈최근 20년간 서울시립대 기구 및 구성원 변동〉

구 분	2019년	1999년	비교
기구편제	- 6처, 8대학, 10대학원 - 12부속기관, 14부설 연구소 - 2법인	- 4처, 7대학, 4대학원 - 9부속기관, 9부설연구소	- 2처, 1대학, 6대학원 증설 - 3부속기관, 5부설연구소 증설
구성원	- 재학생 15,705명 - 교수 429명, 직원 206명	- 재학생 8,827명 - 교수 249명, 직원 204명	- 재학생 6,878명 증가 - 교수 180명 직원 2명 증가

- 따라서 대학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총장 별로 책임역할을 부여하여 총장을 보좌토록 하는 것이 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은 부총장의 임명방법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교육공무원법」은 부총장을 교수 중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총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¹⁾ 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 정 안	수정의견
제3조의4(부총장) ①~③ (생략) ④ 부총장의 임명방법, 직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4(부총장) ①~③ (개정안과 같음) ④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총장이 임명하고, 직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55조 ④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과 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공립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 한편, 다른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2명 또는 3명의 부총장을 두고 있으며, 수도권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는 2명 이상, 인천대는 1명 이상의 부총장을 두도록 근거 법률²⁾에 명시하고 있음.

〈주요 사립대와 국공립대 부총장 설치 현황〉

대학명	인원	부총장 종류	대학명	인원	부총장 종류
연세대	6	교학/행정대외/의무/미래캠퍼스/국제캠퍼스/연구	서울대	3	교육/연구/기획
고려대	1	세종캠퍼스	부산대	3	교육/대외협력/의무
서강대	2	교학/대외	경북대	2	교학/대외협력
성균관대	3	인문사회과학캠퍼스/자연과학캠퍼스/의무	서울과기대	2	교육/연구산학
한양대	4	교학/경영/의무/ERICA	강원대	3	교육연구/대외협력/삼척캠퍼스
중앙대	5	교학/연구/행정/안성/의무	경상대	2	교학/연구
경희대	4	서울캠퍼스/국제캠퍼스/의무/대외협력	충북대	2	교학(공석)/대외협력연구(공석)
한국외대	4	서울캠퍼스/재무대외/글로벌캠퍼스/산학연계	충남대	2	교학/대외협력
동국대	5	기획/교무/연구/의무/경주캠퍼스	전북대	3	교학/연구/대외협력
국민대	3	교학/기획/대외협력	전남대	2	광주캠퍼스/여수캠퍼스
건국대	4	교학/대회/의무/Glocal캠퍼스	인천대	2	교학/대외협력
홍익대	2	서울캠퍼스/세종캠퍼스	부경대	2	학무/산학

다. 미래혁신원 신설(안 제7조의2)

- 안 제7조의2는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³⁾이 2019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⁴⁾으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학미래 혁신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자 교무처 산하 ‘교육혁신본부’를 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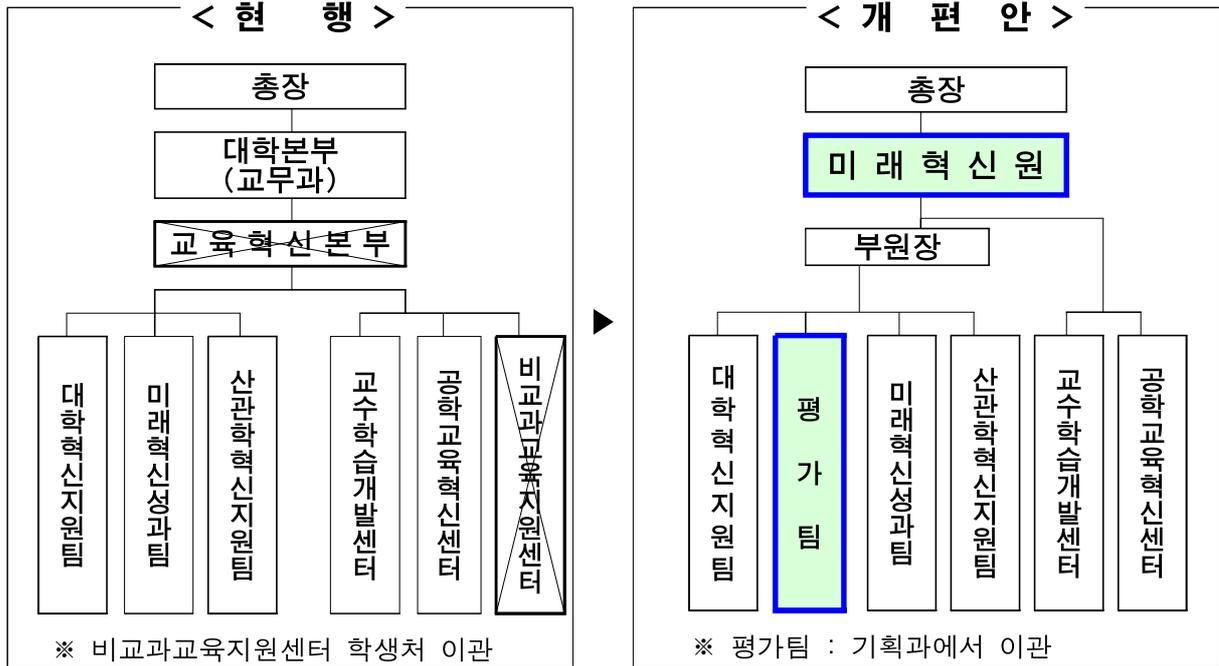
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부총장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학 운영과 관련한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부총장을 둔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부총장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대학 운영과 관련한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1명 이상의 부총장을 둔다.**

3) 교육부 소관 5개 재정지원사업인 ACE+(자율역량 강화 사업), CK(대학 특성화 사업), PRIME(산학연계교육 활성화 사업), CORE(인문역량강화 사업), WE-UP(여성공학인재 사업)

4) 대학혁신사업은 2019년부터 3년간 총 143개 대학에 5,687억 5천 5백만원을 차등 지원함.

직속기구인 ‘미래혁신원’으로 확대·개편하려는 것임.

〈미래혁신원 신설안〉



- 현재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는 교무처, 학생처, 연구처, 국제교육원 등으로 산재되어 총괄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총장직속 기구로 격상시켜 효율적인 사업관리와 통합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기획과의 평가팀을 이관 받아 평가기능 및 통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비교과교육지원센터는 학생처로 이관할 계획임.
- 시립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자율개선대학(I유형 자율협약형)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3년간(2019-2021) 약 13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됨[참고자료2].

〈서울시립대 대학혁신지원사업 개요〉

- 기 간 : '19. 3월 ~ '20. 2월(1차년도)
- 사 업 비 : 44억 2천 7백만원(1차년도) ※ 3년간 약 132억원
- 추진사업 : 4대 분야, 13개 전략, 20개 프로그램, 43개 세부프로그램
 - (교육 분야) 미래형 창의 융복합 교과교육 시행 확대 등 5개 프로그램
 - (연구 분야) 융복합 연구를 위한 협업 체계 구축 등 4개 프로그램
 - (산학 분야) 산학협력 친화적 조직 구성 및 제도 개선·확산 등 5개 프로그램
 - (기타 분야) Global Mobility 프로그램 확대 등 6개 프로그램

-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체 수립한 혁신과제의 이행성과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종합적·체계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함.
- 교육부는 1차 대학혁신사업이 종료되는 2021년에 2차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를 통해 재정지원대학을 다시 선정하고, 2차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 따라서 1차 교육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2차 선정을 위한 사전준비, 국비재정지원의 원활한 확보 등을 위해서는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된 자율지표의 설정부터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수반되어야 하고, 미래지향적 혁신목표와 과제의 수립·시행을 주도할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립대의 조직개편은 그 타당성이 인정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의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25
----------	------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개정이유

공립대학으로서의 경쟁력 제고, 대내외 협상력 강화 및 대학혁신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서울시립대학교에 부총장제를 도입하고, 총장 직속기구로 미래혁신원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립대에 부총장제를 도입함(안 제3조의4)

- (1)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을 각각 1명씩 둠.
- (2)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함.
- (3) 부총장의 임명방법, 직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나. 서울시립대에 총장직속의 미래혁신원을 설립함(안 제7조의2)

다. 부총장 직위 신설에 따라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하도록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개정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 (2019. 9. 26. ~ 10. 7.)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부총장) ①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을 각각 1명씩 둔다.

②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총장의 임명방법, 직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 중 “인권센터를”을 “인권센터 및 미래혁신원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총장·학장·처장”을 “총장·부총장·학장·처장”으로 한다.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부총장제 및 미래혁신원 신설에 따른 소요경비
 - ▶ 서울특별시립대학교 부총장 2명, 미래혁신원장 1명 보직수당 추가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규정>

제3조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부총장제 및 미래혁신원 신설에 따른 소요경비 발생이 발생되나, 예상되는 비용추계액이 연평균 5억원 미만으로 추정

4. 작성자

- 조직담당관, 행정6급, 박지애 주무관(T.2133-6748)